#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0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이언주·허성무·이개호

황 희·정성호·황명선

주철현 · 신정훈 · 민병덕

소병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 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로 한다.

-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 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			
영 활성화) ① (생 략)	영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②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				
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lt;후단 신설&gt;</u>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구			
	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u>우</u>			
	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			
	하는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 정도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u>⑤</u> <u>제4항까지에서</u>			

 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u>규</u>	정한	사항	외이	4)	데이	터선	<u> </u> ]터
의	구축	및 :	<u> 연</u>	활	성회		